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42-1996-003019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1-70 제4층 제4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2		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1-70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9길 50	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 1층 494.96㎡ 2층 494.96㎡ 3층 494.96㎡ 4층 413.40㎡ 지1층 726.97㎡ 옥탑 40.96㎡	도로명 주소 2012년10월26일 등기	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1-70		대	828㎡	2000년3월29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2000년3월29일	제4층 제401호	철근콘크리트조 198.17㎡	도면편철장 1책132장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	828분의 91.328	2000년3월25일 대지권 2000년3월29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3	소유권이전	2012년10월26일 제33263호	2012년4월2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	소유자 우재하 850211-*****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18길 59, 103동 503호 (목동,브라운스톤태릉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7	근저당권설정	2010년5월4일 제14269호	2010년5월3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216,000,000원 채무자 정호근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2-2 로덴하우스웨스트빌리지 -1301 근저당권자 유한회사건원씨에이치투엠힐피엠씨 110114-006643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9(동빙고동)
10	근저당권설정	2017년1월31일 제2250호	2017년1월26일 설정계약	채권최고액 금60,000,000원 채무자 우재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18길 59, 103동 503호 (목동,브라운스톤태릉)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동일드방레 110111-19736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6(대치동)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‘기록사항 없음’ 으로 표시함.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42-1996-003019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1-70 제4층 제4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 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우재하 (소유자)	850211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18길 59, 103동 503호 (목동,브라운스톤태릉)	3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 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7	근저당권설정	2010년5월4일 제14269호	채권최고액 금216,000,000원 근저당권자 유한회사건원씨에이치투엠힐피엠씨	우재하
10	근저당권설정	2017년1월31일 제2250호	채권최고액 금60,000,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동일드방레	우재하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